

# 2026년 경기 우수 벤처기업 표창 공고

벤처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대·내외에 널리 알리고 경기도 산업경제 발전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(기업인) 발굴 및 포상을 위해, 『2026년 경기 우수벤처기업 표창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도내 벤처기업(기업인)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07월 20일

경기벤처기업협회장

## 1. 목적

- 협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벤처기업을 발굴·포상하여 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문화를 확산하고자 함
- 기술혁신, 일자리 창출, ESG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벤처기업(기업인)을 격려하고, 우수사례를 공유·확산함으로써 도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
- 우수 벤처기업을 지역 대표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

## 2. 지원대상

-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(본사)의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벤처기업
  - 창업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전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주소가 “경기도” 소재 기업
  - 공고일 기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‘벤처기업확인서’를 보유한 기업(유효기간 내)
- ‘[붙임1]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’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
- 경기도 관내 벤처기업으로서 기술, 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월하여 대외 경쟁력이 우수하고 사회 공헌도가 높으며 올바른 기업윤리로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
- 최근 3년간 이내 국세·지방세·관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, 산업안전·고용·성희롱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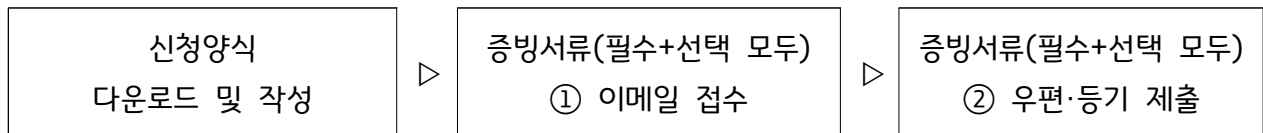
### 3. 선정규모

※ 훈격 및 표창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| 표창부문          | 훈 격          | 작년 표창 규모 (참고) | 2026년(안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경기 우수 벤처기업 표창 |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| 4점            | 약 40점 내외 |
|               | 경기도지사        | 15점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| 13점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| 5점            |          |
| 총 40점 내외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

### 4. 신청접수 안내

- 신청접수 기간 : 2026년 07월 20일(월) ~ 08월 31일(월)
  - 메일 접수의 경우 08월 31일(월) 23시 59분까지 유효하며, 우편(등기)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
- 접수 방법 : 신청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(필수+선택) **이메일, 우편 모두 제출**



- ① 이메일 접수 : 신청서 · [서식 1~5] · 증빙서류(필수/선택)
- ② 우편등기 제출 : 메일 접수 후, 도장날인한 신청서 원본과 증빙서류 모두 등기발송
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
  -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상세 안내는 [표창 신청 양식 - 증빙자료의 준비] 참고
  - 인증서 및 가점 서류 등은 유효기간 내 경우에만 인정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 류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                 | PDF형식으로 변환 금지,<br>한글파일 제출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[서식1] 26년 경기 우수벤처기업 표창 신청서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[서식2] 공적조서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[서식3], [서식3-1] 포상 및 시상에 대한 동의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[서식4] 표창대상자 이력서                | 인감·서명 날인 후<br>PDF 변환 제출   |
| 2) 필수서류 <span style="float: right;">[붙임2. 표창 신청 양식 - 증빙자료의 준비] 참고</span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| 확인기간 유효분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| 최근 2개년 발급본(증명원X)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재무제표 증명원 1부(최근 2개년)           | ‘24~2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(기업/대표자)         | 법인의 경우,<br>기업/대표자 각 1부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(기업/대표자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관세납세증명서 각 1부(기업)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산업재해율 확인서(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) 1부 | ‘24~2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(법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                | 최근 1년 이내 발급본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(법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감사보고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| 상장기업만 해당<br>(최근 2개년)                  |
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표창대상자 사진                      | 이미지 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3) 선택서류(가산점 증빙서류)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[붙임2. 표창 신청 양식 - 증빙자료의 준비] 참고</span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[서식5호] 산업재산권 출원 목록            | 최근 3년 이내(24.01.01~)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투자확인서 또는 투자유치 증빙 서류           | 명시된 투자기관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정부 R&D 및 기술혁신과제 참여실적          | 최근 3년 이내<br>협약서 또는 공문서 사본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기술 관련 인증서 사본                  | NET, NET, 성능인증서,<br>우수제품지정증서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인증서 사본           | 최근 3년 이내(24.01.01~)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국내·외 규격 인증서 사본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국제표준인증 ISO 인증서 사본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           | ESG경영 평가지표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일터혁신 (상생)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실적 증빙서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기업유형 확인서 및 인증서                |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<br>사회적기업,<br>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경기벤처기업협회 정회원증 사본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표창장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3년 이내(24.01.01~)                   |

○ 제출처 : (사)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강보애 과장

- [제출1] 이메일 접수주소 : [kba22@giva.or.kr](mailto:kba22@giva.or.kr) ※신청서, 증빙(필수+선택)서류 ... 메일 우편 모두 제출
- [제출2] 우편·등기 접수주소 : (1622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 
GBSA 7층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강보애 과장 앞

## 5. 선정기준 및 절차

### ○ 선정기준(평가기준 구성)

- 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, 기술·품질, 경영평가(성장성, 안정성, 수익성, 고용 창출), ESG 경영 및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 반영 (\*[붙임3] 표창 심사기준표 참조)
- 기업의 임직원 복지, 국가 경제 기여,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
- 업종·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반영

### ○ 신청·선정 제한기준

- 공고문 내 ‘[붙임1-1]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’ 기준 참고

### ○ 선정절차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고<br>(7.20~8.31) | 신청접수       | - 경기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 및 신청서·증빙서류 담당자 이메일&우편(등기)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▽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진행<br>(9~10월)   | 기본요건 심사    | - 벤처기업 확인 여부 및 공적사항 허위 기재 여부<br>- 추천제한 규정 해당 여부(추천 제한 규정은 『붙임1-1』 참조 요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차 서류심사    | - 기술개발 및 투자, 성장성, 안정성, 수익성, 고용창출, ESG 경영 평가 등<br>- 공적조서 작성의 성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2차 공적심의 심사 | - 1차 서류 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<br>- 공적심의 심사 기준으로 평가 및 훈격 결정<br>- 공적조서 작성 내용 확인<br><small>(*단, 수상 훈격에 따라 ‘현장실사’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음)</small> |
| ▽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완료<br>(11월)     | 최종심사       | - 공적조서 내용을 기반으로 표창 훈격별 각 관계 부처 최종 심사<br>- 서류심사와 공적심의 평가 및 표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▽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상<br>(12.10)     | 시상식        | - 2026년 경기벤처기업인의 날(G-Venture Awards) 개최 시 표창 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○ 선정결과 통보

- 1차 서류심사 결과 통보 : 9월 중순 담당자 개별 메일·문자 안내 예정
- 2차 공적심의 결과 통보 : (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) 공적심의 평가 9월 말 진행 후, 2차 공적심의 결과 11월 말 담당자 개별 메일·문자 안내 예정

## 6. 문의처

- (사)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지원단 강보애 과장 · 이건금 주임
- ☎ 031-259-7343, 7342 / ✉ [kba22@giva.or.kr](mailto:kba22@giva.or.kr)

## 7. 기타사항

-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선정 기업은 표창 심사 기간 동안 주소지 및 상호변경 시 통지 의무가 있으며, 결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음
-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 미비 사항에 대한 구제 불가능함

##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

### □ 표창 기준

#### 1)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- 중서금지(상훈법 제4조) :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
-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포상금지 : 포상을 받은 자는 그 포상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포상을 받을 수 없음
-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: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훈격별 해당기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

### □ 포상추천 제한(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근거)

####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#### 2) 형사처분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 - 포상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,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로 같음

#### 3) 『상훈법』 제 8조 및 『정부 표창 규정』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-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#### 4) 『산업안전보건법』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 -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더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(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)
  -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 대상에서 제외
  - 현장 경영 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#### 5) 『공정거래관련법』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) 및 그 임원
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-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#### 6) 『근로기준법』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  -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#### 7) 추천일 당시 『국세기본법』, 『관세법』 또는 『지방세징수법』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-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#### 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## 정부포상의 취소

### □ 취소 대상

-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,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등 서훈 또는 정부표창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(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)

### □ 취소 절차

- 추천권자는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(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함)
  -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음
  - 정부포상의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시(정기 취소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회적물의 야기 및 추천권자의 요청 등으로 신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실시(수시 취소)하도록 함
  - 정부포상을 취소하려는 경우 공적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후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- \* 다만, 「상훈법」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경우 '공적 재검증,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,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' 생략 가능

#### < 정기 취소 >

-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제1호(거짓공적)와 제2호(국가안전에 관한 죄)의 사유에 의한 취소 안건은 1년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
-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제3호(범죄경력)의 사유에 의한 취소 안건은 3년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당해연도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

#### < 수시 취소 >

- 정부포상관련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거나 논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부포상을 추천한 추천권자는 신속한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무회의 상정 추진



## □ 사후관리

- 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, 추천권자는 포상증서와 훈·포장, 수장·수치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·금전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인계하여야 함

## □ 관보 게재

-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문서로써 취소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, 통보하는 내용에는 '관보에 게재할 내용(포상명, 소속, 성명, 훈격, 취소사유, 환수여부 등)'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
-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
- 행정안전부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자의 이름을 정부포상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,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